

부 칙 <1997. 8. 30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비상임이사추천권에 대한 경과규정)

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유지될 수 없거나, 이사회에 버금가는 위치를 주주협의회가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비상임이사추천권은 상임이사추천권으로 대체된다.

제3조 <삭제 1998. 8. 28.>

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
부 칙 <1997. 9. 23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8. 3. 30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199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<삭제 1998. 8. 28.>

부 칙 <1998. 8. 28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199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9. 2. 26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9. 10. 1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① 제29조제2항의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제29조제9항의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00. 3. 17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이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01. 3. 23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2. 3. 29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① 2002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독립비상임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이사 중 2002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비상임이사 또는 독립비상임이사로서의 잔여임기로 한다.

부 칙 <2003. 10. 21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액면미달 신주발행 관련 결의에 따라 신주에 대한 주금 납입이 완료되는 즉시 발효한다.

부 칙 <2004. 3. 26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4. 12. 16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 3. 25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

부 칙 <2006. 3. 24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 3. 28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 9. 22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3. 13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3. 12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3. 23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,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3. 21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6. 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3. 27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9조의 3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 2 및 제 16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3. 31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5. 6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이 회사가 2019. 4. 26.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는 이 회사가 2019. 4. 26.

체결한 합병계약서(그에 대한 변경 계약 포함)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20. 6. 15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2조의2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3. 26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3. 3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